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사방지에서 입목·죽의 벌채 등의 행위 허가 시 착수일 등을 정하지 않거나,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여 민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사방지 내 입목·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시 통지의무 삭제(안 제11조제3항)
- 행위 허가 시 착수일, 종료일을 정하지 않거나, 착수일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허가권자의 허가조건 등으로 대체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) ① 삭 제 ② (생 략) ③ 제2항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<u>입목 · 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</u> <u>은 자는 허가 시에 사업착수 또</u> <u>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</u> <u>였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</u> <u>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</u> <u>착수 시와 종료 시에 특별자치</u> <u>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</u> <u>군수 ·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</u> <u>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	제11조(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)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71